

#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3. 10. 1(월)  
기획행정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3. 9. 17.

나. 제출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13. 9. 17.

라. 상정일자 : 2013. 10. 1 (제211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 제안설명 : 유병윤 정책기획관
- 검토보고 : 왕동항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 질의 및 토론
- 원안가결

## 2. 제안설명 요지

### 가. 제안이유

- 시·도지사의 사무가 군수·구청장에게 이양되거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동사무로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 관련법령에 따라 사무 용어 정비 및 사무위임을 추가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가. 신설 또는 수정되는 사무

- 환경정책과 (안 별표 1, 안 별표 2 및 안 별표 5)
  - 군수·구청장·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 등의 사무에 대하여 제외규정을 신설함.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안의 사업장 제외

※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 내 사업장 관리 : 市 대기보전과 소관사항

○ 수질보전하천과 (안 별표 1, 안 별표 2 및 안 별표 5)

- 「하천법」 제7조(하천의 구분 및 지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

·지방 1, 2급하천 ⇒ 지방하천

-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사무를 정비함.

·구거·하천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한 권한⇒하천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한 권한

○ 공원녹지과 (안 별표 1, 안 별표 2, 안 별표 4 및 안 별표 5)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시자연공원’이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공원’으로 변경되어 용어를 정비함.

·도시자연공원 사무⇒도시자연공원에서 변경된 도시공원의 사무

- 기 위임된 도시공원에 대하여 “민간공원 추진 및 도시공원 부지 개발행위 특례 추진”사무를 신설함.

- 공원녹지과 소관 도시관리계획 관련사무를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로 추가함.

·도시자연공원구역 매수청구

·공원·녹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

·도시계획시설(공원, 녹지, 일반·경관 광장)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공고

## 나. 삭제되는 사무

○ 건설심사과 (안 별표 1 및 안 별표 2)

-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으로 군수·구청장에게 이양된 사무를 삭제함.

·건설기계사업의 등록·변경, 건설기계조종사에 관한 사무

○ 대기보전과 (안 별표 1, 안 별표 2 및 안 별표 5)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군수·구청장에게 이양 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동사무로 개정된 사무를 삭제함.

- 비산먼지의 규제, 운행차의 개선명령에 관한 사무
- 수질보전하천과 (안 별표 1, 안 별표 2 및 안 별표 5)
  - 「하천법」 제50조(하천수의 사용허가 등)의 권한이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유수의 사용허가”규정을 삭제함.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상대상 물건 부재로 “하천편입 토지보상에 관한 권한”을 삭제함.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동 개정 조례안은
  - 군수·구청장·경제자유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개별 사무 중 위임사항에서 제외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권한과 책임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군수·구청장에게 이양된 사무를 정비하여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며,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명칭변경 및 법령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
  - 소관 관계법령의 개정시기와 사무위임조례 반영시점이 상이한 바가 있어 향후 사무의 연계성 확보 및 책임소재의 명확성을 위하여 적기에 개정될 수 있도록 부서의 주의가 필요하다 판단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차준택 위원 >

- 관련법령 개점시점과 사무위임조례 개정시점이 상이한게 있는데 그에 따른 책임소재가 발생될 우려가 있지 않은지?
- 관련법령이 개정되면 해당 조례를 개정하는데 사무위임조례는 차후에 한꺼번에 이루어지고 있음. 가급적 공백이 없도록 하고 있음

### 5. 토론요지

가. 찬 성 : 이용범, 차준택, 최용덕, 홍성욱, 이강호

나. 반 대 : 없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5명 : 찬성 5명)

##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실과별란 중 “중소기업지원과”를 “기업지원과”로 하고, 같은 표의 산업기반과 제2호 근거법규란 중 “동법”을 각각 “같은 법”으로 하며, 같은 과(산업기반과) 번호란 중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여 같은 표 기업지원과(중전의 중소기업지원과)의 제2호란 및 제3호란으로 하고, 같은 표의 산업기반과란을 삭제한다.

별표 1의 실과별란 중 “일자리창출과”를 “일자리정책과”로 하고, 같은 란 중 “재산관리과”를 “회계과”로 한다.

별표 1 중 건설심사과 제1호란부터 제8호란까지 및 제12호란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과 제13호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과 제14호 근거법규란 중 “「건설기계저당법시행령」”을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으로 한다.

13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및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 및 제3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 같은 법 제44조
----	------------------------------	-----------------------------------------------------

별표 1의 환경정책과 제1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 활동에 의한 권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	------------------------------------------------------------	-------------------------------

별표 1의 환경정책과 제4호의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안의 사업장 제외
-------------------------------------------------------------------

별표 1의 대기보전과 제1호나목란을 삭제하고, 같은 과(대기보전과) 제2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	----------------------------	----------------	--

별표 1의 실과별란 중 “청소과”를 “자원순환과”로 한다.

별표 1의 수질보전하천과 제6호의 위임사무명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방1, 2급 하천”을 “지방하천”으로 하고, 같은 과(수질보전하천과) 제7호의 위임사무명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방1, 2급 하천”을 “지방하천”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란을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의 근거법규란 중 “같은법”을 “「하천법」”으로 하며, 같은 과(수질보전하천과) 제11호의 위임사무명란 중 “지방1, 2급 하천관리”를 “지방하천 관리”로 하고, 같은 과(수질보전하천과) 제15호의 위임사무명란 중 “지방 1, 2급 하천내”를 “지방하천 내”로 하며, 같은 과(수질보전하천과) 제16호의 위임사무명란 중 “지방1,2급하천”을 “지방하천”으로 한다.

별표 1의 공원녹지과 제1호의 위임사무명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조성된 도시자연공원 시설구역”을 “조성된 도시자연공원 시설구역, 도시자연공원에서 변경된 조성 도시공원”으로 하고, 같은 호 위임사무명란 다목 중 “입안(도시자연공원 제외)”을 “입안”으로 하며, 같은 호의 근거법규란 중 “동법”을 각각 “같은 법”으로 하고, 같은 호의 너목란 다음에 더목란 및 러목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더. 민간공원 추진	같은 법 제21조	
러. 도시공원 부지 개발행위 특례 추진	같은 법 제21조의2	

별표 1의 공원녹지과 제1호의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외사항 : 도시자연공원 및 도시자연공원에서 변경된 도시공원의 조성계획 입안 및 설치

별표 1의 실과별란 중 “해양항공정책과”를 “항만공항정책과”로 한다.

별표 2의 실과별란 중 “중소기업지원과”를 “기업지원과”로 하고, 같은 표의 산업기반과 제2호 근거법규란 중 “동법”을 각각 “같은 법”으로 하며, 같은 과(산업기반과) 번호란 중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여 같은 표 기업지원과(중전의 중소기업지원과)의 제2호란 및 제3호란으로 하고, 같은 표의 산업기반과란을 삭제한다.

별표 2의 실과별란 중 “일자리창출과”를 “일자리정책과”로 하고, 같은 란 중 “재산관리과”를 “회계과”로 한다.

별표 2 중 건설심사과 제1호란 및 제5호란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과 제6호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과 제7호 근거법규란 중 “「건설기계저당법시행령」”을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으로 한다.

6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및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 및 제3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 같은 법 제44조
---	------------------------------	-----------------------------------------------------

별표 2의 환경정책과 제1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 활동에 의한 권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	------------------------------------------------------------	-------------------------------	--

별표 2의 환경정책과 제4호의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안의 사업장 제외			
-------------------------------------------------------------------	--	--	--

별표 2의 대기보전과 제1호나목란을 삭제하고, 같은 과(대기보전과) 제2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	----------------------------	----------------	--

별표 2의 실과별란 중 “청소과”를 “자원순환과”로 한다.

별표 2의 수질보전하천과 제6호의 위임사무명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방1,2급 하천”을 “지방하천”으로 하고, 같은 과(수질보전하천과) 제7호의 위임사무명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방1,2급 하천”을 “지방하천”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란을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의 근거법규란 중 “같은법”을 “「하천법」”으로 하며, 같은 과(수질보전하천과) 제11호의 위임사무명란 중 “지방1급, 2급하천관리”를 “지방하천 관리”로 하고, 같은 과(수질보전하천과) 제15호의 위임사무명란 중 “지방1급, 2급하천내”를 “지방하천 내”로 하며, 같은 과(수질보전하천과) 제16호의 위임사무명란 중 “지방1급, 2급하천”을 “지방하천”으로 하고, 같은 과(수질보전하천과) 제19호란을 삭제한다.

별표 2의 공원녹지과 제6호의 위임사무명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조성된 도시자연공원 시설구역”을 “도시자연공원에서 변경된 조성 도시공



원”으로 하고, 같은 호 위임사무명란 다목 중 “입안(도시자연공원 제외)”을 “입안”으로 하며, 같은 호의 근거법규란 중 “동법”을 각각 “같은 법”으로 하고, 같은 호의 너목란 다음에 더목란 및 러목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더. 민간공원 추진 러. 도시공원 부지 개발행위 특례 추진	같은 법 제21조 같은 법 제21조의2	
-------------------------------------	--------------------------	--

별표 2의 공원녹지과 제6호의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외사항 : 도시자연공원에서 변경된 도시공원의 조성계획 입안 및 설치
----------------------------------------

별표 2의 성과별란 중 “해양항공정책과”를 “항만공항정책과”로 한다.

별표 4의 성과별란 중 “재산관리과”를 “회계과”로 한다.

별표 4의 공원녹지과 제1호의 위임사무명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도시자연공원”을 “도시자연공원 및 도시자연공원에서 변경된 도시공원”으로 하고, 같은 호의 근거법규란 중 “동법”을 각각 “같은 법”으로 하며, 같은 호의 타목란 다음에 파목란 및 하목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의 수입기관란 중 “서부공원사업소장”을 “서부·북부공원사업소장”으로 하며, 같은 과(공원녹지과) 제2호의 수입기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파. 민간공원 추진 하. 도시공원 부지 개발행위 특례 추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같은 법 제21조의2	
-------------------------------------	------------------------------------------	--

북부공원사업소장
----------

별표 5의 성과별란 중 “정보화통계담당관실”을 “정보화담당관실”로 하고, 같은 란 중 “중소기업지원과”를 “기업지원과”로 하며, 같은 란 중

“일자리창출과”를 “일자리정책과”로 하고, 같은 란 중 “재산관리과”를 “회계과”로 한다.

별표 5의 환경정책과 제16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6	야생생물 보호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야생생물 보호원 임명 등  나.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 위촉  다. 야생생물 보호원 등의 해임 또는 위촉 해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같은 법 제61조  같은 법 제62조
----	---------------------------------------------------------------------------------------------------	--------------------------------------------------------------

별표 5의 환경정책과 제22호의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안의 사업장 제외

별표 5 중 대기보전과 제2호란을 삭제한다.

별표 5의 실과별란 중 “청소과”를 “자원순환과”로 한다.

별표 5의 수질보전하천과 제10호의 위임사무명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방1,2급 하천”을 “지방하천”으로 하고, 같은 과(수질보전하천과) 제 11호의 위임사무명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방1,2급하천”을 “지방하천”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란을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의 근거법규란 중 “같은법”을 “「하천법」”으로 하며, 같은 과(수질보전하천과) 제15호의 위임사무명란 중 “지방1,2급하천관리”를 “지방하천 관리”로 하고, 같은 과(수질보전하천과) 제19호 및 제20호의 위임사무명란 중 “지방1급, 2급하천”을 각각 “지방하천”으로 하며, 같은 과(수질보전하천과) 제28호의 위임사무명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공유재산중 행정재산”을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하천)”으로, “권한(단, 구거·하천에 한함)”을 “권한”으로 한다.

별표 5의 공원녹지과 제2호의 위임사무명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도시 계획시설(공원, 녹지에 한함)”을 “도시계획시설(공원, 녹지, 일반·경관광장에 한함)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호의 근거법규란 중 “동법”을 각각 “같은 법”으로 하며, 같은 호의 다목란 다음에 라목란부터 사목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도시자연공원구역 매수청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마. 공원·녹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30조
바. 도시계획시설(공원, 녹지, 일반·경관광장)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같은 법 제86조 및 제88조
사.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공고	같은 법 제85조

별표 5의 공원녹지과 제3호의 위임사무명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호의 근거법규란 중 “동법”을 각각 “같은 법”으로 하며, 같은 호의 거목란 다음에 너목란 및 더목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민간공원 추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더. 도시공원 부지 개발행위 특례 추진	같은 법 제21조의2

별표 5의 공원녹지과 제4호의 위임사무명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호의 근거법규란 중 “동법”을 각각 “같은 법”으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별표 1] -----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중소기업 지원과	1	“생략”	“생략”		기업 지원과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산업 기반과	1	“생략”	“생략”		<삭제>	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계량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다음의 권한 가. “생략” 나. “생략”  다. “생략” 라. “생략”  마. “생략” 바. “생략” 사. “생략”	“생략”  동법 제5조제2항 및 시행령 제10조 동법 제6조 동법 제7조 및 시행령 제2조 동법 제25조 동법 제32조 동법 제38조			3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마. “현행과 같음” 바. “현행과 같음” 사.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같은법 ----- 같은법 ----- 같은법 ----- 같은법 ----- 같은법 ----- 같은법 ----- 같은법 -----		
일자리 창출과	1	“생략”	“생략”		일자리 정책과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재산 관리과	1	“생략”	“생략”		회계과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건설 심사과	1	건설기계조종사 면 허증 발급	「건설기계관 리법」 제26조 같은법 시행 규칙 제71조	----	<삭제>					「건설기계관리 법」 개정에 따 라 군수·구청장 에게 이양된 사무 삭제
	2	건설기계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건설기계관 리법」 제44조 같은법 시행 규칙 제94조		<삭제>					
	3	건설기계조종사의 신고	「건설기계관 리법」 제30조 같은법 시행 규칙 제82조		<삭제>					
	4	건설기계조종사의 면허대장 비치	「건설기계관 리법」 시행규 칙 제78조		<삭제>					
	5	건설기계조종사의 면허증의 반납	「건설기계관 리법」 시행규 칙 제80조		<삭제>					
	6	건설기계조종사의 면허의 취소·정지	「건설기계관 리법」 제28조		<삭제>					
	7	건설기계조종사의 면허증 재교부	「건설기계관 리법」 시행규 칙 제77조		<삭제>					
	8	건설기계조종사의	「건설기계관		<삭제>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별표 1] -----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u>면허번호 부여</u>	<u>리법」시행규칙 제72조</u>							
	9~11	“생략”	“생략”			9~1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2	<u>건설기계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 대여업에 한함) 가. 건설기계 사업자 신고 나. 건설기계 사업자의 변경신고</u>	<u>「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같은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6조, 제66조의2</u>				<u>&lt;삭 제&gt;</u>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따라 군수·구청장에게 이양된 사무 삭제 및 위임규정 정비
	13	<u>건설기계의 강제처리</u>	<u>「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 및 제3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u>			13	<u>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및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u>	<u>「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 및 제3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 같은 법 제44조</u>		
	14	<u>건설기계등록에 관한 사항 가.~마. (생략) 바. (생략) 사. (생략)</u>	“생략” <u>「건설기계저당법시행령」 제2조</u> “생략”			14	----- 가.~마. (현행과 같음) 바. (현행과 같음) ----- 사.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u>「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u> ----- “현행과 같음”		근거법규 제명변경에 따른 정비
	15	“생략”	“생략”			15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환경정책과	1	<u>「야생동물·식물보호법」에 의한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 활동에 의한 권한</u>	<u>「야생동물·식물보호법」 제11조제1항</u>	-----	-----	1	<u>「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 활동에 의한 권한</u>	<u>「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u>		근거법규 제명변경에 따른 정비
	2~3	“생략”	“생략”			2~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4	<u>「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다음의 권한 가.~ 하.(생략)</u>	“생략”	<u>&lt;신설&gt;</u>		4	----- 가.~ 하.(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u>「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안의 사업장 제외</u>	누락규정(제외규정) 신설로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함
	5~6	“생략”	“생략”			5~6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대기	1	<u>「대기환경보전법」에</u>		“생략”	-----	1	-----		“현행과	관련법 개정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별표 1] -----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보전과		의한 다음의 권한 가.(생략)  나. <u>비산면지의 규제</u>  다.~바.(생략)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 및 같은법 제42조 <u>같은법 제43조</u>  “생략”	”	-----		----- 가.(현행과 같음)  <u>&lt;삭 제&gt;</u>  다.~바.(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u>&lt;삭 제&gt;</u>  “현행과 같음”	같음”	따라 군수·구청장에게 이양된 사무 삭제
	2	「 <u>대기환경보전법</u> 」에 의한 다음의 권한 가. <u>운행차의 개선명령</u>  나. <u>과태료 부과, 징수</u>	「 <u>대기환경보전법</u> 」 제70조 <u>같은법 제94조</u>		2	「 <u>대기환경보전법</u> 」에 따른 <u>과태료 부과 징수</u> 권한	「 <u>대기환경보전법</u> 」 제94조			지자체 고유사무에서 환경부 위임사무로 변경된 ‘ <u>운행차의 개선명령</u> ’업무 위임규칙으로 이관
	3	“생략”	“생략”		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청소과	1~12	“생략”	“생략”		<u>자 원 순환과</u>	1~1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수질보전 하천과	1~5	“생략”	“생략”		-----	1~5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6	<u>지방1, 2급 하천</u> 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다.(생략)	“생략”		-----	6	<u>지방하천</u> ----- 가.~다.(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하천법 개정하천 구분변경)사항 반영 및 관할 홍수통제소장에 게 위임된 권한 삭제
	7	<u>지방1, 2급 하천</u> 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u>유수의 사용허가</u>  나.(생략)  다.~카.(생략)	「 <u>하천법</u> 」 제50조 <u>같은법</u> 제33조 제1항제1호 “생략”		-----	7	<u>지방하천</u> -----  <u>&lt;삭 제&gt;</u>  나.(현행과 같음)  다~카.(현행과 같음)	<u>&lt;삭 제&gt;</u>  「 <u>하천법</u> 」 -----  “현행과 같음”		
	8~10	“생략”	“생략”		-----	8~10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1	<u>지방1, 2급 하천관</u> <u>리</u> 를 위한 관계자에 게 토지의 사용 및 출입하게 하는 권한	“생략”		-----	11	<u>지방하천 관리</u> ----- ----- -----	“현행과 같음”		하천법 개정하천 구분변경)사항 반영
	12~14	“생략”	“생략”		-----	12~1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5	<u>지방 1, 2급하천내</u> 의 실시계획 및 준공인가(비관리청)	“생략”		-----	15	<u>지방하천 내</u> ----- ----- -----	“현행과 같음”		하천법 개정하천 구분변경)사항 반영
	16	<u>지방1,2급하천</u> 예정 지 등에서의 행위 허가	“생략”		-----	16	<u>지방하천</u> ----- ----- -----	“현행과 같음”		
17~22	“생략”	“생략”		-----	17~2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공 원 녹지과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u>&lt;신설&gt;</u>	-----	1	----- ----- -----		<u>제 외 사</u> <u>항 : 도</u> <u>시 자연</u>	- 도시자연공원예지 로 관련사무 정비 - 기 위임된 도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별표 2] 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					[별표 2] -----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중소기업 지원과	1	“생략”	“생략”		기업 지원과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산업 기반과	1	“생략”	“생략”		<삭제>	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계량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다음의 권한 가. “생략” 나. “생략”  다. “생략” 라. “생략”  마. “생략” 바. “생략” 사. “생략”	“생략” 동법 제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동법 제6조 동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동법 제25조 동법 제32조 동법 제38조			3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마. “현행과 같음” 바. “현행과 같음” 사.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같은 법 ----- 같은 법 ----- 같은 법 ----- 같은 법 ----- 같은 법 ----- 같은 법 ----- 같은 법 -----		
일자리 창출과	1	“생략”	“생략”		일자리 정책과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재산 관리과	1	“생략”	“생략”		회계과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건설 심사과	1	건설기계 조종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나.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번호의 부여 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의 재교부 라.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대장등 마.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의 반납 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의 취소·정지 사. 건설기계조종사 의 신고의무  아. 건설기계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건설기계 관 리법」 제26조 같은법 시행규 칙 제71조 같은법 시행규 칙 제72조 같은법 시행규 칙 제77조 같은법 시행규 칙 제78조 같은법 시행규 칙 제80조 같은법 제28조 같은법 제30조 같은법 시행규 칙 제82조 같은법 제44조 같은법 시행규 칙 제94조		----	<삭제>				「건설기계 관 리법」 개정 에 따라 군수·구 청장에게 이 양된 사무삭 제
	2~4	“생략”	“생략”			2~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5	건설기계사업에 관 한 다음의 권한 (단, 대여업에 한함) 가. 건설기계 사업 자 공고  나. 건설기계 사업 자의 변경신고	「건설기계 관 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 행령 제13조 같은법 시행규 칙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같은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66조, 제				<삭제>			「건설기계 관 리법」 개정 에 따라 군수·구 청장에게 이 양된 사무삭 제 및 위임규 정 정비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별표 2] 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				[별표 2] -----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u>66조의2</u>							
	6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 및 제3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			6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및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 및 제3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 같은 법 제44조		
	7	건설기계등록에 관한 사항 가.마 (생략) 바. (생략) 사. (생략)	“생략” 「건설기계지당법시행령」 제2조 “생략”			7	----- 가.~마. (현행과 같음) 바. (현행과 같음) 사.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장법 시행령」 ----- “현행과 같음”	근거법규 제명변경에 따른 정비	
환경정책과	1	「야생동물·식물보호법」에 의한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 활동에 의한 권한	「야생동물·식물보호법」 제11조제1항	-----	-----	1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 활동에 의한 권한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근거법규 제명변경에 따른 정비	
	2~3	“생략”	“생략”			2~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4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다음의 권한 가.~하.(생략)	“생략”	<신설>		4	----- 가.~ 하.(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안의 사업장 제외	
	5~6	“생략”	“생략”			5~6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대기보전과	1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다음의 권한 가.(생략) 나. <u>비산먼지의 규제</u> 다.~바.(생략)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 및 같은법 제42조 같은법 제43조 “생략”	“생략”	-----	1	----- 가.(현행과 같음) <u>&lt;삭 제&gt;</u> 다.~바.(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u>&lt;삭 제&gt;</u>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관련법 개정 에 따라 군수·구청장에게 이양된 사무 삭제
	2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다음의 권한 가. <u>운행차의 개선명령</u> 나. <u>과태료 부과, 징수</u>	「대기환경보전법」 제70조 같은법 제94조			2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권한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지자체 고유사무에서 환경부 위임사무로 변경된 “운행차의 개선명령” 업무 위임규칙으로 이관
	3	“생략”	“생략”			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별표 2] 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					[별표 2] -----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청소과	1~12	“생략”	“생략”		자원 순환과	1~1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수질보전 하천과	1~5	“생략”	“생략”		----	1~5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6	지방1,2급 하천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다.(생략)	“생략”		6	지방하천----- 가.~다.(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하천법 개정하 천 구분변경 사항 반영 및 관할 홍수 통제소장에 게 위임된 권한 삭제
	7	지방1,2급 하천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유수의 사용허가 나.(생략)  다.~카.(생략)	「하천법」 제50조 같은법 제33조 제1항제1호 “생략”		7	지방하천-----  <삭 제> 나.(현행과 같음)  다~카.(현행과 같음)	<삭 제> 「하천법」 ----  “현행과 같음”			
	8~10	“생략”	“생략”		8~10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1	지방1급, 2급하천관 리를 위한 관계자에 게 토지의 사용 및 출입하게 하는 권한	“생략”		11	지방하천 관리----- ----- -----	“현행과 같음”			하천법 개정하 천 구분변경 사항 반영
	12~14	“생략”	“생략”		12~1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5	지방1급, 2급하천내 의 실시계획 및 준공인가(비관리청)	“생략”		15	지방하천 내----- ----- -----	“현행과 같음”			하천법 개정하 천 구분변경 사항 반영
	16	지방1급, 2급하천 예 정지 등에서의 행 위허가	“생략”		16	지방하천----- ----- -----	“현행과 같음”			
	17~18	“생략”	“생략”		17~18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9	하천편입 토지보상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편입토지 조서의 작성  나. 보상청구  다. 보상대상자의 결정  라. 보상심의위원회 심의  마. 보상금액의 산정  바. 보상금 지급의 통지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삭 제>					「하천 편입 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 조 치 법」에 따른 보상대상 물 건 부재로 관련조항 삭 제
20~24	“생략”	“생략”		20~2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별표 5]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별표 5] -----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장외통계 담당관실	1~2	“생략”	“생략”		정보화 담당관실	1~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중소기업 지원과	1~5	“생략”	“생략”		기업 지원과	1~5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일자리 창출과	1	“생략”	“생략”		일자리 정책과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재산 관리과	1~2	“생략”	“생략”		회계과	1~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환경 정책과	1~15	“생략”	“생략”		----	1~15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6	야생 동·식물 보호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야생 동·식물 보호원 임명 등 나. 명예 야생 동·식물 보호원 위촉 다. 야생 동·식물 보호원등의 해임·위촉	「야생동·식물 보호법」 제59조 같은법 제61조 같은법 제62조		16	야생생물 보호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야생생물 보호원 임명 등 나.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 위촉 다. 야생생물 보호원 등의 해임 또는 위촉 해제	「야생생물 보호법」 제59조 같은 법 제61조 같은 법 제62조			근거법규의 제명변경에 따른 정비
	17~21	“생략”	“생략”		17~2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2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다음의 권한 가.~ 하.(생략)	“생략”	<신설>	22	----- 가.~ 하.(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누락규정(제외규정) 신설로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함
대기 보전과	1	“생략”	“생략”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비산먼지의 발생 억제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같은법 시행규칙 별표9 환경부장관 권한 사업장외의 사업장에 한함) 가.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변경신고) 수리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삭 제>				관련법 개정 따라 군수·구청장에게 이양된 사무 삭제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별표 5]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별표 5] -----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나. 시설의 설치나 조 치의 이행 또는 개선 명령 다. 명령미이행자에 대 한 사업의 중지 또 는 시설 등의 사용 중지 또는 사용제 한명령 라. 비산면지시설기준 변경신청 수리 마. 신고필증 교부	같은법 제43조 제2항 같은법 제43조 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58조제7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58조제8항							
	36	“생략”	“생략”			36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u>청소과</u>	1~20	“생략”	“생략”	<u>자 원 순환과</u>	1~20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수질보전 하천과	1~9	“생략”	“생략”	----	1~9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0	지방1,2급 하천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다.(생략)	“생략”		10	지방하천----- 가.~다.(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하천법 개정하천 구분변경)사항 반영 및 관할 홍수통제소장에 게 위임된 권한 삭제
	11	지방1,2급하천에 대 한 다음의 권한 가. 유수의 사용허가 나.(생략) 다.~자.(생략)	「하천법」 제 50조 같은법 제33조 제1항제1호 “생략”		11	지방하천----- <삭 제> 나.(현행과 같음) 다~자.(현행과 같음)	<삭 제> 「하천법」----- “현행과 같음”			
	12~14	“생략”	“생략”		12~1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5	지방1,2급 하천 관리 를 위한 관계자에게 토지의 사용 및 출 입하게 하는 권한	“생략”		15	지방하천 관리----- ----- -----	“현행과 같음”			하천법 개정하천 구분변경)사항 반영
	16~18	“생략”	“생략”		16~18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9	지방1급, 2급 하천 내의 실시계획 및 준공인가(비관리청)	“생략”		19	지방하천----- ----- -----	“현행과 같음”			하천법 개정하천 구분변경)사항 반영
	20	지방1급, 2급하천 예 정지 등에서의 행위 허가	“생략”		20	지방하천----- ----- -----	“현행과 같음”			
	21~27	“생략”	“생략”		21~27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별표 5]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별표 5] -----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28	공유재산중 행정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한 다음의 권한(단, 구거·하천에 한함)가.~아.(생략)	“생략”			28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하천)-----권한가.~아.(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분장 사항 정비
공원 녹지과	1	“생략”	“생략”		-----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도시계획시설(공원, 녹지에 한함)에 관한 다음의 권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실시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등) 가. (생략) 나. (생략) 다. (생략)	“생략” 동법 제47조 동법 제48조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	2	도시계획시설(공원, 녹지, 일반·경관광장에 한함)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라. 도시자연공원구역 매수청구 마. 공원·녹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 바. 도시계획시설(공원, 녹지, 일반·경관광장)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사.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공고	“현행과 같음” 같은 법 ----- 같은 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도로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30조 같은 법 제86조 및 제88조 같은 법 제85조		공원녹지과 소관 도시관리계획 사무 위임
	3	도시공원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실시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등) 가. (생략) 나. (생략) 다. (생략) 라. (생략) 마. (생략) 바. (생략) 사. (생략)	“생략” 동법 제13조 동법 제16조 동법 제19조 동법 제20조 동법 제24조 동법 제25조		-----	3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마. (현행과 같음) 바. (현행과 같음) 사.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같은 법 ----- 같은 법 ----- 같은 법 ----- 같은 법 ----- 같은 법 ----- 같은 법 -----		-기 위임된 도시공원에 대한 민간공원 개발행위 특례사무 위임 -근거법규 제명변경에 따른 정비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별표 5]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별표 5] -----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아. (생략) 자. (생략) 차. (생략) 카. (생략) 타. (생략) 파. (생략) 하. (생략) 거. (생략)	<u>동법</u> 제27조 <u>동법</u> 제40조 <u>동법</u> 제41조 <u>동법</u> 제45조 <u>동법</u> 제46조 <u>동법</u> 제51조 <u>동법</u> 제56조 “생략” <신 설>  <신 설>				아. (현행과 같음) 자. (현행과 같음) 차. (현행과 같음) 카. (현행과 같음) 타. (현행과 같음) 파. (현행과 같음) 하. (현행과 같음) 거. (현행과 같음) 너. <u>민간공원 추진</u>	<u>같은 법</u> ----- <u>같은 법</u> ----- <u>같은 법</u> ----- <u>같은 법</u> ----- <u>같은 법</u> ----- <u>같은 법</u> ----- <u>같은 법</u> ----- “현행과 같음” 「 <u>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u> 」 제21조 <u>같은 법</u> 제21조의2		
	4	녹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 <u>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u> 」 제9조의 실시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녹지) 가. (생략) 나. (생략) 다. (생략) 라. (생략) 마. (생략) 바. (생략) 사. (생략) 아. (생략)	“생략” <u>동법</u> 제38조 <u>동법</u> 제25조 <u>동법</u> 제41조 <u>동법</u> 제45조 <u>동법</u> 제46조 <u>동법</u> 제56조 “생략”		4	----- ----- (「 <u>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u> 」 ----- -----) -----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마. (현행과 같음) 바. (현행과 같음) 사. (현행과 같음) 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u>같은 법</u> ----- <u>같은 법</u> ----- <u>같은 법</u> ----- <u>같은 법</u> ----- <u>같은 법</u> ----- <u>같은 법</u> ----- “현행과 같음”		근거법규 제명변경에 따른 정비
	59	“생략”	“생략”			59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